

###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2000. 01. 01. 최초제정	2019. 06. 03. 부분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22. 03. 01. 부분개정
2009. 08. 01. 부분개정	2023. 03.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3. 04.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4. 01. 01. 부분개정
2018. 03.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거하여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초빙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 초빙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초빙교원의 구분)** ①초빙교원의 직위는 교육, 연구경력, 전문가로서의 공인정도에 따라 초빙교수, 초빙 부교수, 초빙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16.04.01.>

②초빙교원은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학과소속 초빙교원,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활동을 중점으로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 학·군 협약에 의해 임용된 학군협약초빙교원 등으로 구분한다.<신설 2023.03.01.>

**제4조(자격)** 이 규정에 의한 임용 대상자는 교육법이 정하는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체 등에서 당해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로 임용일 현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만화, 전통공예, 도자기, 피부미용 등과 같은 특수한 교과의 경우, 교수자격기준에 미달하나 당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
3. 기타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하여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 <신설 2022.03.01.>

**제5조(임용절차)** ①초빙교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전임교원의 동의와 추천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초빙교원에게는 대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서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3.01.>

**제7조(업무)** ①초빙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강의, 실험·실습, 실기(현장실습 포함)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전임교수와의 공동연구

4. 산학협력활동(특성화, 창업 등) 또는 그 밖에 본교가 수행하는 과제 추진<개정 2018.03.01.>

②초빙교원은 주당 3시수 이상에서 9시수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여야하며,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12시수 까지 담당할 수 있다. 단, 동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채용된 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03.01., 2019.06.03.>

**제8조(초빙교원의 제출서류)** 초빙교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개정 2019.06.03.>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교원 인사기록 카드(학교 양식) 2부
5. 경력증명서 각 1부
6. 신분증명에 관련한 기타 제증명 서류<신설 2019.06.03.>

**제9조(신분보장)** 이 규정에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대학 교원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0조(보수)** ①초빙교원에 대하여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정급여액으로 지급하되, [별표 1]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6.03., 2023.03.01.>

②삭제 <2018.03.01.>

③초빙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처우)** ①초빙교원에게는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②초빙교원에게는 본 대학의 교원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2조(인원)** 겸임교원 포함 초빙교원 수는 환산인원이 전임교원 인원 범위 내로 한다.

**제13조(해임)** 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경우
2.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7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해임할 만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제14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 개정내용과 제10조의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임용된 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내용은 202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급여 산정표&lt;신설 2019.06.03.&gt;,&lt;개정 2022.03.01., 2023.04.01.&gt;

## 기본급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학군협약에 의해 채용된 초빙교원 및 소속 학과에 전임교원이 없어 학과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초빙교원	16,320,000	12개월
B. 그 밖의 초빙교원	120,000	12개월(기준 시수 : 3시수)

## 초빙교원 수당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학술연구비	6,480,000	540,000원*12개월
급식비	1,680,000	140,000원*12개월
명절휴가비	400,000	200,000원*2개월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06.03., 2024.01.01.>

### 초빙교원 평가표

평가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 평가자	소 속		성 명	

평가항목		배점	등급					점수
			대단히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대단히 불만	
1	인성 및 품격	20	20	16	12	8	4	
2	학칙 및 제 규정 준수여부	20	20	16	12	8	4	
3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15	15	12	9	6	3	
4	교수법 및 학생지도 (산학중점:업무수행 및 사업기여도)	20	20	16	12	8	4	
5	자기개발의 정도 및 적극성	10	10	8	6	4	2	
6	근무태도 및 근태현황	15	15	12	9	6	3	
		100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